[별지 제1호 서식]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대신대학교)의 2021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대신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대신대학교)의 2022년 2월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22 년 4 월 7 일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감사 기 세 록 (인)

감사 이 기 덕 (인)

피감사자 (입회인)

총무처장

성명 하 정 호 (인)

[별지 제2호 서식]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1회계연도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 법인 일반업무회계 1.오랜기간 소송이 이어오고 있어 변호사 소송비용과 더불어 학교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 법인 일반업무회계 1.학교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일반용역비로의 지출도 상당하여 법적분쟁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임변호사와 면밀히 준비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이사장** **임영식**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대신대학교)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1회계연도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 교비회계 1 6년연속 학생수가 100% 충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유지해 주셔서 총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좋은 결과를 위해 교직원들의 수고에 부응하여 적절한 보상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비회계 1. 교직원들의 수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무위원회에서 협의할 예정임
2. 2021년 창단된 축구부가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는데, 각 노회 산하 지교회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축구부원의 역량강화와 신앙정착으로 대외적으로도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노력바랍니다.	2. 2022년에는 본교 축구부에 대한 지역 교계의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신앙정착으로 위해 교목실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예정임
3.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국자의 수가 감소 되고 교육부의 정원 제한 조치로 외국인 학생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재정적 운영에 특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추가로 기존의 외국인 학생들도 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앙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교 부설 어학원에 대한 긴축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외국인 유학생의 신앙정착으로 위해 지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4.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지원자 수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106회 총회 결의에 의해 2022년도부터 장로교육원이 개원하여, 영남지역은 대신대학교가 지정된 바 본교의 신학 특성화와 홍보를 위해 각 노회 및 교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택장로들의 교육을 대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일괄 교육하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대신대학교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을 부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본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장로교육원 특성화 홍보과정의 일환으로 본 교단 피택 장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임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직인